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4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조지연·박덕흠·박충권

김석기 • 김상욱 • 김형동

신성범 • 구자근 • 김은혜

엄태영 · 김도읍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,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,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.

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,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1항 전단 중 "협력"을 "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밖의 협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을 할수 있으며, 필요한 기술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9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 제19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 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)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 등) ① -----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 달·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나 그 밖의 협력----.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.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 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-----지원을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등을 현 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장에 파견하여 예보 및 특보의 할 수 있다. 제공과 설명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기술·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